

#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2019. 12. 12.

공 주 시



1. 게시기간 : 2019. 12. 12. ~ 2019. 12. 25.
2. 게시방법 : 공주시 홈페이지 게시
3. 직권말소일 : 2019. 12. 11.
4. 말소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오도환	건축물 위 치	공주시 유구읍 세동리 208
	주 소 (대장상주소)	공주시 유구읍 세동리	건축물 현 황	주1 1층 목조/자연석 주택 33㎡ 주2 1층 목조/자연석 주택 23.1㎡ 주3 1층 목조 주택 26.4㎡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건축물의 철거·멸실	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		